목 차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고객권리 안내문 ······2
2.	고객정보 취급방침 안내4
3.	주요 분쟁사례 7
4.	가입자 유의사항8
5.	주요내용 요약서9
6.	보험용어 해설
7.	무배당 KB 대중교통보장보험 보통보험 약관 ······13
8.	선지급서비스특약 특별보험 약관31
9.	사후정리특약 특별보험 약관38
10.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별보험 약관4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고객권리 안내문

이 권리안내문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신 고객님에게 동의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와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KB 생명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활용(이용)할 것이며, 동의하신 범위 이상으로 불법·부당하게 제공·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에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및 '신용정보 관리·보호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공・활용에 동의해주신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거래정보, 보험금지급정보, 질병정보 입니다. 제공・활용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활용(이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 ① 계약자, 피보험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계약정보
- ③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④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기록 등)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활용됩니다.

이것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KB 생명이 직접 또는 국내의 타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생명 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기타 KB 생명과 업무 위·수탁 관계에 있는 자(계 약적부·보험사고조사수탁회사, 콜센터업무수탁회사, 리서치업체),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게 제공하여 보험계약의 체결·관리, 보험사고의 조사, 보험계약의 상담, 순보험요율의 산출·검 증. 보험원가의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리서치업무. 공공기관의 정책자 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과 관련하여 고객님께서는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목적 범위 외의 제공·활용(이용) 중단 요청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활용(이용)하거나 동 의서에 명시된 제공받는 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을 요청하 실 수 있습니다.

2. 동의 철회권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제공·활용 (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는 계약 체결일로부 터 3 개월 경과 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 고유목적으로 제공·활용하는데 대한 동의는 철회하실 수 없습니다.

(주의 : 금융거래를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님의 정보활용중단 및 신용평가를 위한 신 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업무위탁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철회는 제한됩니다.)

3. 전화수신거부권 (DO-Not-Call)

보험·대출계약의 유지·관리와 무관한 영리목적의 전화·이메일·SMS 등의 정보 수신을 거부 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제공 사실 통보 요구 권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KB 생명이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고객님은 정보제공 사실 통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의 요청일로부터 1 년 이내의 제공 사실 을 통보해 드립니다.(단, 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권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KB 생명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 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 그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6. 신용정보 조회·열람 및 정정 청구 권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KB 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 감독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권리를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회사 고객만족센터(1588-9922)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www.kbli.co.kr)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신용정보주체에 한합니다. (배우자, 가족 등 제 3 자는 신청불가)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영업목적의 정보활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에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고객정보 취급방침

KB 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 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금융거래정보"라 한 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개인신 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 다.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 공할 수 있다.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 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 래회수

이에 따라 KB 금융그룹은 KB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 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
-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 항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 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
- 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 여,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 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위변제·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 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등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 결정 정보, 국세 등 조세 또는 벌금 등의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 보 등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29 조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 균 거래회수

Ⅱ. 고객정보의 제공처

KB 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 금융 지주, KB 국민은행, KB 국민카드, KB 투자증권, KB 생명보험, KB 자산운용, KB 캐피탈, KB 저축은 행, KB 부동산신탁, KB 인베스트먼트, KB 신용정보, KB 데이타시스템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 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편의가 예상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 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

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 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 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 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철회하는 고객의 정보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 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 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 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 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 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 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4. 5. 1

KB금융그룹

KB 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KB 국민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 국민카드	고객정보관리인
KB 투자증권	고객정보관리인	KB 생명보험	고객정보관리인	KB 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KB 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KB 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 부동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KB 인베스트먼트	고객정보관리인	KB 신용정보	고객정보관리인	KB 데이타시스템	고객정보관리인

☑ 주요 분쟁사례

상품군	보장성	
유형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관련	
	55세 여자인 A고객은 중년기에 접어들어 건강 등이 걱정되던 중 평소 자주 찾아오던 설계사 B에게 보험에 대해 문의하게 됨	
	설계사 B씨에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상담 후 ○○건강보험 가입을 제안받았고, 가입을 하려던 중 3~4개월전 잠깐 혈압이 높아져 검사 등으로 3일 정도 입원한 것이 생각나 설계사에게 확인함	
내용	청약서에 서명 이후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입되었으며 약관, 증권,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정상적으로 전달받음	
	얼마 후 고혈압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당함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확인하였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함	
	보험계약 성립에 있어 청약관련서류의 작성은 본인(계약자, 피보험자)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건강사항 등의 작성도 동일함	
유의사항	보험은 일반 임상의학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위험을 평가하므로, 경미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약 실수, 고의 등으로 누락할 경우 보험계약은 강제로 해지될 수 있음	

☑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u>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u>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u>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u> <u>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책임준비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u> 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网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 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 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 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2)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철회

(1)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 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진단 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2)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3)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 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계약취소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 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용어 해설

1.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

2.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계약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을 보험 기간과 같게 정할 경우에는 전기납입(全期納入)이 되고, 보험기간 보다 짧게 정하면 단기납입 이 된다. 이를테면 20년만기 20년납은 전기납입이라 하고, 20년만기 10년납입은 단기납입이 라고 한다.

11.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

12.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 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한다. 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및 청 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1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14. 표준이율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감독원 장이 정하는 이율을 말한다.

15.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 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6.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17.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경영 방침 및 구체적 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18.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있으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19.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 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보험회사에서 하는 계약 소멸행위나 보험계약자가 하는 계약 소멸행위가 해지 이다.

무배당 KB 대중교통보장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15 제2조【용어의 정의】 ················15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2조【보험나이 등】····································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

무배당 KB 대중교통보장보험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별표 3[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 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 23 조(계약의 소멸) '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로 써 특히 그 결과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해당하는 보험 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 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 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 4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2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 르기로 한 경우
-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 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 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 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10 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1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 니다.

제 12 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 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3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 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 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 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 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 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 반대증거가 있 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29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제 15 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6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 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 ④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 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 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 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 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 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19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우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 20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가입금액
 - 2. 계약자
 -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9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1 조 【피보험자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피보험자는 변경되는 피보험자 와 같은 성(性)에 한합니다.

- ② 회사는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 습니다.
- ③ 제 1 항의 경우 변경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 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 ④ 제 3 항의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⑤ 제 1 항에 의한 피보험자 변경시에는 제 23 조(계약의 소멸)에서 정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15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6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 항 및 제 3 항, 제 24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2 항 내지 제 4 항을 준용합니다.

제 22 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19 조(계약의 무효) 제 2 호 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 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 23 조 【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 21 조(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 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4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 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 1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 25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 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26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29 조(해지환 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 19 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9 조(해지환급금) 제 1 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7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29 조(해지환급 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28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29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29 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별표 4(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30 조 【보험계약대출】

이 계약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제 31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2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35 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36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7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38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39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 령을 따릅니다.

제 40 조 【예금보험에 따른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 1 구좌]

		[-, -, -, -, -, -, -, -, -, -, -, -, -,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대중교통 이용 중 교 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1 억원

주) 피보험자가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 21 조(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안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 호, 2011.1.1 시행)상의 분류 번호이며, 제 7 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분류표

- 1.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라.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 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대중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 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2. 제 1 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 통승용구를 말합니다.
 -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기차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7 조"에서 규정한
 - (1)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 (2) 시외버스 운송사업
 - (3) 택시운송사업
 - (4)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세버스와 셔틀버스는 제외)
 - 라. 여객수송용 여객선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 8 조 제 2 항 및 제 29 조 제 2 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 사망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 년 이내 : 표준이율의 50% 1 년 초과기간 :1%
(제 29 조 제 1 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 34 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위의 표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말합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특별보험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32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33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34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35
제11조【특약의 보장개시일】	35
제1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3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4조【특약의 보험기간】	35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16조【해지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36
제5관 계약의 해지	
제1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36
제6관 기타사항	
제18조【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제19조【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의 특칙】	37
제20조【다른 특약의 취급】	37
피의 지【조게야 야과 그저이 즈요】	27

선지급서비스특약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 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 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 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제 14 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중에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의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면허를 가 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12 개월 이내(단, 정기보험의 경우 6 개 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 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 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여 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 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8 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14 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중에 회사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 6.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0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10 조(특 약의 체결 및 소멸)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제 1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제 13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 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5 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16 조 【해지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1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5 관 계약의 해지

제 1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 ② 제 1 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6 관 기타사항

제 18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 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0조(다른 특약의 취급)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 ⑤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 특약의 경우에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 19조 【주계약이 2인(3인,多人) 보장보험계약인 경우의 특칙】

- ① 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로 대체합니다.
- ③ 주계약이 2 인(3 인,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 20 조(다른 특약의 취급) 제 1 항에 불구하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주계약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제 20 조 【다른 특약의 취급】

-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1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사후정리특약 특별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2조【특약의 무효】	
제 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4조【회사의 보장개시일】	40
제2관 보험료의 납입	
제 5조【특약의 보험료】	40
제3관 보험금의 지급	
제 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40
제 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0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8조【보험금의 청구】····································	41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41
제5관 기타사항	
. 제10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71

사후정리특약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 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 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 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과 이를 회사가 승 낙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특약의 무효】

-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 1. 보험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 2.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3.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단. 보험수익자 중 1인 이상이 실명으로 지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제외
- ② 회사는 이 특약에 의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 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 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보험수익자는 이미 지급받 은 보험금에 대하여는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수익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보 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보험수익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 하여는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 은 없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회사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계약이 부활 (효력회복)된 경우)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

제 5 조 【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회사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 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회사가 정한 금액 및 해당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른 금액 한도내에서 주계약 및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액은 제외합니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합니다.

제 7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여 회사가 이 보험의 일부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 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잔여 보험금 지급시 이를 해당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보 험금에서 차감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청 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 그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 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8 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청구서
 -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제1영업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1일)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의하여 가족수입보험 또는 가족수입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회사는 잔여 보험금에 대하여 월급여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일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제 10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계약 약 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별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적용대상】	43
제 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43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43
제3관 보험금의 지급	
제 5조【보험금의 청구】	44
제 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44
제4관 기타사항 등	
ᆐᄀᆍᆙᄌᄋᄀᆑᆘ	4.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 에 적용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됩니다. (이하 보험계 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 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3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 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 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관 기타사항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